제1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10.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고 숭 범 위원장 규 상 부위원장 도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정 은 보 위 원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헌 원 위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1년도 제18차 금융위원회 및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 □ 2021년도 제18차 금융위원회 및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旣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6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36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370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21.4월)의 후속조치로서 중금리대출을 중·저신용층으로 보다 확대공급하기 위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워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7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마련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유료전환 7일 전 고지, 사용회차·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화불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의결안건 제373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

⇒ 원안대로 의결함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에 대해 원안 의결에 찬성하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음. 왜 신고율이 낮은가 봤더니 10개의 각 등급 내부에 기여율을 감안해서 5개로 되어 있어서, 거의 45 개~50개로 구분이 됨. 이렇게 구분하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고, 관리도 어려우며, 신고하는 사람도 포상금을 얼마 받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함.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효율화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실제로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림.
- (위원) O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되는데, 혹시 개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었는지?
- (보고자) 사실 이번에 제도 전반을 고치기보다는 포상금 규모를 조금 상향하는 데에 집중을 했고, 관련 과정에 있어서 그런 세세한 검토가 있었다거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음.
 저희가 보니까 약간복잡한 면은 있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음.
-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7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되는 조건의 행사방법 및 관련 공시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 (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원안의결에 찬성하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듦.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 자체를 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환사채(CB)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전환가액조정(Refixing)이라는 것은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VC)들이 이익을 보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고민하면 좋겠음. 이 전환가액조정(Refixing)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추인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장을 선도해 갈 필요가 있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 전환사채(CB)에 따른 콜옵션 분리하는 것을 불가하게 하는 것과, 사실은 최대주주한도라는 것은 지금 제가말씀드린 대로 하면 별의미가 없음. 장기적으로는 전환가액조정(Refixing)이 안 되게 만드는 구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의 우려도 있고 이미 발표하신 것도 있으니까 고려하신 대로 가되근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보다 건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위원) 결국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그 전환사채(CB)에 콜옵션을 따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전환사채 (CB)를 발행해서 인수한 사람이 전환사채(CB) 전환에 따른 콜옵션을 띄워서 결국 대주주한테 팔 것임. 대주주한테 얼마에 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과연 이 콜옵션이라는 것을 부과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선입견이 좀 있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런 류의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듦.
- (위원) 전환가액조정(Refixing)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 조치로써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과연 시장의 상황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
- (위원) 전환가액조정(Refixing)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떨어져서 하향조정하는 전환가액조정(Refixing)의 경우와 상향조정하는 전환가액조정(Refixing)의 경우가 상향조정할 때는 발행가액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비대칭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맞는 것인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음. 예를 들어서 전환사

채(CB)를 발행했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전환가액을 발행가액보다 더 올릴 수 있어야 회사의 전체적인 자본충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될 수 있을 텐데, 전환사채(CB)에 대한 투자자의 이익 쪽으로 불균형이 되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듦.

○ (위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른 위원님 들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원칙적으로 전환사채(CB)라 는 것은 결국 전환가액조정(Refixing)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특 히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 나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 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 특히 일부 대주 주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렇게 정교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을 것임. 따라서, 그것이 왜 그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등 현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 볼 필요가 없음. 두 번째, 우리가 규제(Regulation)를 할 때 금감원과 금융위 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못하도록 막으면 됨. 물론 그 렇게 되면 악용은 못하겠지만 순기능도 살리지 못하기 때문 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시장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검토해서 다음번 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 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제도설계를 다시 해서 금융위 전체회의 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 일단, 개정 내용 시행 후에 기업 전환사채(CB) 발행 동향도 보고, 자금조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전환가액조정(Refixing) 문제도 그렇고 최대주주에 콜옵션 매매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람.
- (보고자) 오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환사채 발행은 모든 각국에서 발행을 하는데 이렇게 콜옵션 부여라든지, 특히 제3자에 콜옵션을 행사한다든지, 또 전환가액조정(Refix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 흔한 것은 아님.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하면, 지금 이렇게 전환가액조정(Refixing) 제한 조금 상향하는 것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전환사채(CB)발행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많았음. 그래서 개정안 정도로 시작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시행된 이후에 시장상황을 보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하겠음.
-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환사채라는 것 자체가 원 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회사가 나빠지면 유상증자를 한 다든지 자기들이 노력을 가하는 것이고, 대주주나 특수관계

인들이 잘 못하니까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인데, 그렇게 전환사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전환사채발행 인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만약제3자가 그것을 인수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환가액조정(Refixing)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가 어려울 때 하는 것이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전환사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전환사채의 본연의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듦.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제3자한테는 좀더 융통성 있게(flexible) 전환가액조정(Refixing)을 허용해줘야 자금조달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듦.

○ (위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CB)가 되었든 신주인수권부사채 (BW)가 되었든 전환을 한다는 것은 옵션을 사는 개념임. 그 옵션을 수정해서 또 다른 옵션을 만들어내는, 전환가액조정 (Refixing)을 한다는 것은 다른 옵션에 가격을 내고 사야 되는 것임. 만약 전환사채(CB)를 할 때 전환가액조정 (Refixing)을 할 수 있는 전환사채(CB)가 있다면 수익률을 훨씬 낮게 가져가야 되는 것임. 그런데 그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전환가액조정(Refixing)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추인해서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옵션이라는 것이 권리이고, 조정(fixing)이 되어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사를 하고 조건이 안 갖추어지면 행사를

안 하는 것임. 그렇게 만들어야 시장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돈 가진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게되는 것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서 어차피현실에 있는 제도는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것은 당분간 그렇게 가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임.

-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일단 그대로 하고 시행이 되고 동향이 어떤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같이 판단하는 것이 좋겠 음. 일단은 여기까지 해 보고, 좀 더 동향을 봐가면서 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75호 『진영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76호 『대주씨플러스대부(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77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78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 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미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 의사표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면제하고, 채권추심 관련 법률적 권한·지위 거짓표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보고자) 이어서 안건소위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음. 동 제재안건과 관련하여 제17차 및 제18차 안건소위에서 2 차례 논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하여 심의하였음. 먼저 제재 관련 사항임. '진영자산관리대부㈜' 및 '대주씨플러스대부 (유)'의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소각한 채권을 악의 없이 추심하 였고, 위반행위도 2건 이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금감원의 영업전부정지 3개월 조치안에 대해 조치를 면제하 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의하였음. 다만, 조치면제 이후 채권 관리를 엄격히 하여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향후 동일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제재 예정임을 안내토록 하 였음. 또한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및 '와이앤케이파트 너스대부㈜'의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 짓 표시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등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어 금감원 조치원안대로 유지하였 음. 다음 제도 개선관련 사항임. 대부업법상 금융위 등록 대 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밖에 할 수 없으나, 타 업권의 제재와 같이 영업정지 외에 기관경고 등 위반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재 근거를 마련·개선 토록 하였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5호 및 제376호 안건과 관련하여, '진영자산관리대부㈜'와 '대주씨플러스대부 (유)'에 대한 제재를 다음과 같이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진영자산관리대부㈜'와 '대주씨플러스대부

(유)'는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소각한 채권을 악의 없이 추심하였고, 위반행위도 각각 1건 및 2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의 영업전부정지 3월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진영자산관리대부㈜'와 '대주씨플러스대부㈜'에 대한 제재조치는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제377호, 제378호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제375호, 제376호는 수정의결하고, 제377호, 제378호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제375호, 제376호는 수정의결하고, 제377호, 제378호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79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80호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이 지점 폐쇄를 위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81호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폐쇄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인가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82호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국씨티은행에게 소매금융부문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
 - (위원) 노사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그러한 노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입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님. 그래서 조치명령(안)의 내 용들을 보면 금융이용자들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들만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문제에 대한 정책 감독당국의 개입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원칙적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음. 이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되고 첫 번째로 하는 조치명령 임. 이 조치명령권 도입의 의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음. 그런데 이것이 단계적 폐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 지고 인가 대상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금융소 비자 불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과정을 관 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 감원이 같이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림. 다만,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는 것임. 노사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관심을 보였던 의원실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83호 『팩토리 뮤츄얼 인슈런스 컴퍼니 한국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팩토리 뮤추얼 인슈런스 컴퍼니(FM 글로벌) 한국지점에 대해 보험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4호 『㈜**더존비즈온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더존비즈온의 기업정보조회업을 본허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워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5호 『KB캐피탈(주) 및 유비벨록스(주)의 본인신용 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KB캐피탈㈜ 및 유비벨록수㈜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본허가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6호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망분리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87호 『마스턴투자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전문사모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이 부동산 공모펀드를 운용 하는 단종 공모운용사가 되고자 집합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44호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계획** 관련 대응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계획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지금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현행법 문언 등을 볼 때 은행법 하에서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서 필요시에 제도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 노조를 비롯해서 정치권 등에서 여러 주장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 은행과와 금감원 은행감독국에서 절차에 맞게끔 법 률검토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함. 희 망퇴직 등과 관련하여, 현재 노조와 사측간 협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사측과 노측이 희망퇴직패키지 등과 관련해서 긴밀 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희망퇴직(안)의 발표라든지 진행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해서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보고자) 추가설명 드리면, 희망퇴직패키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어느 정도 잠정 합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 만, 직원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한국씨티은 행의 소매금융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링하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는 파업 등을 통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 지 업무연속성 계획이라든지 소비자보호 장치를 챙기면서, 오늘 조치명령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조치명령 발동에 따른 소비자보호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완 토록 하고 그 부분을 확정한 다음에 금융위에 보고 드리도 록 하겠음.
- (위원) 소매금융 철수과정에서 퇴직금 등에 대한 논의가 해외 에 잘못 알려질 경우, 현재 우리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일자리 측면에서의 고민, 관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홍보대응도 균형적으로 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 (보고자) 현재로써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음. 왜냐하면 노사 간에 희망퇴직패키지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는 되었는데 일반 대상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음. 그래서 그 패키지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 부분이 내가 희망퇴직을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각자 가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음.
- (위원) 본건은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음. 오늘 인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하고 다음에 논의할 조치명령에 대한 보도자료를 금융위와 금감원이같이 내기로 했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같이 내용도 공유했으면 좋겠음.
- (위원) 이 건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사실 이런 건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지? 지금 사람들이 점포를 가는 것이 24%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모바일은 이미 온라인뱅킹을 넘어섰고, 이런 구조이면 우리 국내은행들의 지점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같음.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듦.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은 행과장님께서 얘기한 자산의 급격한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 에 대한 관점에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위원) 저도 동의함.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의 우리 은행산업의 트렌드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 겠음.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건 제45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9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4분 폐회)